

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의2] <신설 2024. 6. 20.>

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(제10조의2제1항 관련)

1. 시설·장비 기준

- 가.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외 공간과 실내 공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. 이 경우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외 공간은 농축산물 생산 공간과 분리되어야 한다(농축산물 생산 공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.
- 나. 세면대, 음수대 및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을 갖출 것
- 다. 소화기·구급약품과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갑·모자 등의 비품을 갖출 것

2. 인력 기준

- 가. 치유농업시설의 대표자 1명과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갖출 것
- 나. 치유농업시설 대표자와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 - 1) 치유농업사
 - 2)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을 치르기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
 - 3) 「농촌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시행하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
 - 4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유농업 관련 교과목을 11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
- 다.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와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또는 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실시하는 이용자의 권리 및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최근 1년 이내에 이수하였을 것

3. 운영 기준

- 가.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
 - 1) 운영 방침
 - 2) 중장기 목표
 - 3)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·관리에 관한 사항
 - 4) 치유농업자원(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·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

한 농업·농촌자원을 말한다)에 관한 사항

5)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인력에 관한 사항

나.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록을 작성·관리하고 있을 것

다.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의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

라.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와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내용 등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·보관할 것

마.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력이 관리되고 있을 것

바.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갖출 것

사. 치유농업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갖출 것

아. 치유농업서비스 참여자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

자.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

비고

1. 「농촌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인증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.
2.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